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시장등의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 확인 의무 신설 등〉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6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28.
3. 회부연월일 : 2025.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전통시장 골목길, 학교 앞 이면도로와 같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설치된 긴급단추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된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

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현행법에 따른 보행안전 시설의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실태와 관련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회신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보행안전 등 시설점검) ① 특별시장등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등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 또는 관계

현행	개정안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¹⁾,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도로에 일정한 시설(이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동 법 시행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종류와 구조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데³⁾, 이 중 긴급단추는

-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람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조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에서 따라 영상정보처리기와 함께 설치되는 안전시설의 한 종류임.

[시행규칙 [별표 1]의 긴급단추 사진]



자료 :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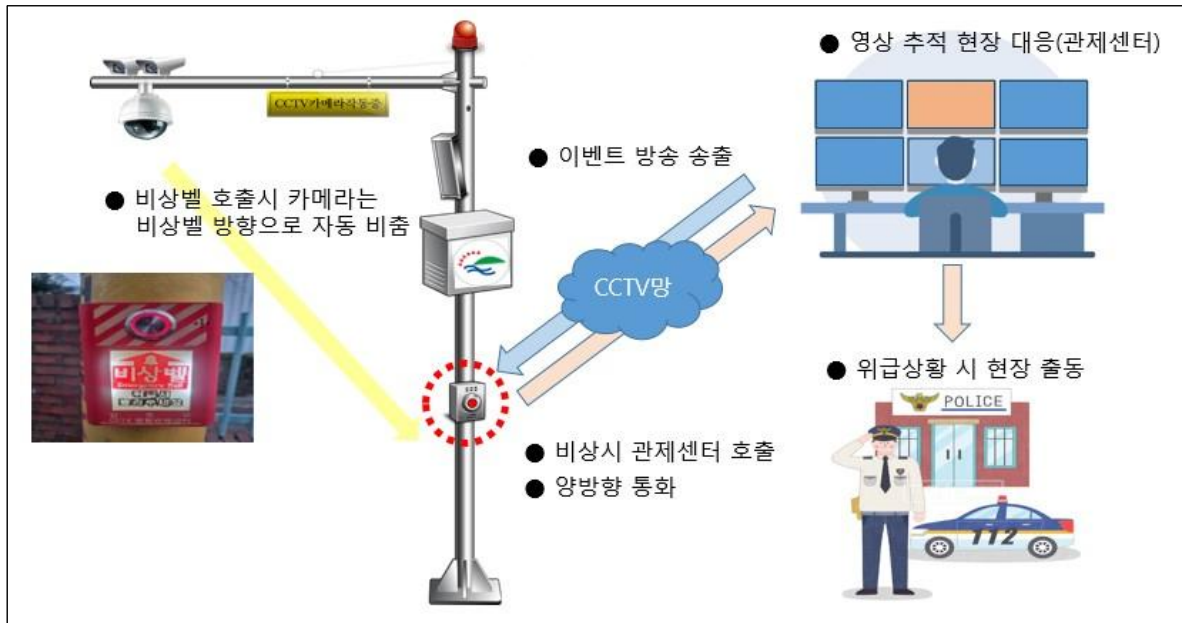
긴급단추를 호출하면 CCTV가 긴급단추 방향으로 촬영 위치를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해당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통합관제센터 호출 기능을 통해 신고자와 통합관제센터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급상황 시 통합관제센터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음.

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 조명시설
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점자블록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긴급단추 운영체계도]



자료 : 행정안전부

2025년 9월 기준 전체 보행환경개선지구 238개소 중 76개소에 총 646개의 긴급단추가 설치되어 있음.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긴급단추 설치 현황(2025. 9월 기준)]

(단위 : 개소, 개)

구 분	보행환경개선지구 수	긴급단추가 설치되어 있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수	설치된 긴급단추 수
계	238	76	646
서울	78	28	175
부산	18	6	6
대구	8	1	1
인천	9	9	189
광주	3	3	63
대전	10	1	3
울산	4	4	34
세종	2	-	-
경기	18	4	46
강원	5	1	12

구 분	보행환경개선지구 수	긴급단추가 설치되어 있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수	설치된 긴급단추 수
충북	11	1	17
충남	3	3	26
전북	24	1	2
전남	20	9	45
경북	4	-	-
경남	12	5	27
제주	9	-	-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긴급단추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대해서 특별시장등에게 안전시설의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실태와 관련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회신을 하도록 규정하여,

전통시장 골목길, 학교 앞 이면도로와 같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설치된 긴급단추의 오인신고·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

- 4) 한편, 공중화장실의 비상벨의 경우 신고자가 단추를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 최근 5년 간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된 건수의 비율이 전체 신고 건수 대비 36.7%에 해당하여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21~2025년 6월 공중화장실 비상벨 신고·오인건수 현황]

구 분	신고건수	오인건수	오인률
2021 ~ 2025. 6월	1,051,868	386,560	36.7%

(자료 : 행정안전부) ※ 전국 공중화장실은 78,183개소이며, 이 중 화장실 내 비상벨이 있는 개소는 20,752개소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는 입법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 제15조 제1항5)은 각호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로 일정한 유형을 열거하면서 긴급단추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동 법 시행규칙 제5조6)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유형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조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설치할 수 있는 그 밖의 안전 시설의 예시로서 규정되어 있음.

[시행규칙 [별표 1]의 긴급단추 관련 규정]

9.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 가. 보행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시설과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밖의 안전시설(긴급단추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보도(歩道)용 방호(防護)울타리
 - 2. 조명시설
 - 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6. 점자블록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마련된 예시적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 유형에 대해 법률에서 곧바로 이에 대한 특별시장등의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보행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단추’를 현행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 중 하나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개정안 제15조의2에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특별시장등이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할 의무와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5. (생략)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u>6. 보행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단추</u>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골목길, 학교 앞 이면도로,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방지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